

8. 地方稅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4269號 1990. 12. 3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 제2호의4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3.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05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증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5조 제2항 중 “입목 또는 항공기”를

“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입목 또는 항공기”를 “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한다.

제108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감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감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취득.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감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9조 제1항 중 “토지를”을 “토지등을”로 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부채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중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의3 제2항 제3호 중 “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하고, 동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18호 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한다.

1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개발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항공기. 이 경우 국제선에 주로 취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1조 제4항 중 “입목 중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한다.

제113조 제1항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27조의2 본문 중 “토지를”을 “토지등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를 “부동산(토지·건축물·어업권 및 공업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을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 단서 중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을 각각 “부동산가액”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채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128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행정구역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반 변경 및 행정관청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의한 주소변경이나 표시변경 등에 따른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도시 내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제108조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 및 선박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의2 제2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의2 제2항 제3호중 “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

족회 및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로 하고, 동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18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한다.

1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15조·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개발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

제132조의2 제3호중 “제2호 이외의 등록”을 “제2호외의 등록”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 (1) 비영업용: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 (2) 영 업 용: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 (1) 비영업용: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
 - (2) 영 업 용: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5,000원

제163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영업용 자동차의 소득권 취득으로 인한 등록

제1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4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단위: 원)

구 분	인구 50만 이상 시	기타 시	군
제1종	45,000	30,000	18,000
제2종	36,000	22,500	12,000
제3종	27,000	15,000	8,000
제4종	18,000	10,000	6,000
제5종	12,000	5,000	3,000
제6종	6,000	2,500	1,000

제180조 제3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증 기

제10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기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증기를 제외한다.

5. 항공기

제104조 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7.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증기·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을 말한다.

제1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증기·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군·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거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182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4조의2 제2항 단서중 “5년간에 한한다”를 “5년간에 한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84조의2 제2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 및 제21조의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소유하는 농지개발시설물

제184조의3 제2항 제4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항 제6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85조를 삭제한다.

제187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8조 제1항 제2호(2)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0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0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3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1,800만원 이하	4만5천원+1,300만원 초 과금액의 1,000분의 10
1,8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9만5천원+1,800만원 초 과금액의 1,000분의 30
2,60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33만5천원+2,600만원 초 과금액의 1,000분의 50
3,500만원 초과	78만5천원+3,500만원 초 과금액의 1,000분의 70

제188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 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90조 제2항 중 “건축물, 광구·선박 또는 항공기”를 “건축물·중기·선박 또는 항공기”로 한다.

제1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1조(소액불징수) 재산세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6조의5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씨씨 이하	120원
2,000씨씨 이하	19원	1,500씨씨 이하	160원
2,500씨씨 이하	19원	2,000씨씨 이하	22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500씨씨 이하	250원
		3,000씨씨 이하	410원
		3,000씨씨 초과	630원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단위: 원)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	-
대형전세버스	70,000	-
소형전세버스	50,000	-
대형일반버스	42,000	115,000
소형일반버스	25,000	65,000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단위: 원)

적 재 정 량	영 업 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	28,500
2,000킬로그램 이하	9,600	34,500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	48,000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	63,000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	79,500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	130,500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	157,500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단위: 원)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	157,500
소형특수자동차	13,500	58,500

6.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업 용
3,300원	18,000원

제196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연세액이 4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6조의8 제2항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2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0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400만원 초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08만원+1,000만원 초 과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13만원+2,500만원 초 과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 초과	1,463 만 원 + 5,000 만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제212조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234조의13 제2항 단서 중 “5년간에 한한다”를 “5년간에 한하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동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는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소유하는 농지개발시설물의 부속토지

제234조의14 제2항 제4호 중 “협동소조

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38조의2 제1항 및 제242조 제1항 중 “제185조, 제189조 및 제195조”를 각각 “제189조, 제191조 및 제19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 제2호의4 제110조의4 제2항 제7호의 사업용 항공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4 제2항 제2호·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의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용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항공기 및 외항선박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용 항공기와 외항선박을 연부로 취득중인 경우의 취득세 과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개정사유 ▶

에너지절약과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면허세 정액세율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며,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농지세의 세율구조를 개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 종래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감면되어온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거나 감면대상으로 제외하도록 함.
 - 가.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 나. 중기를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 다. 자가용 승용차 외의 모든 자동차도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세율은 자가용 승용차보다 낮은 세율로 정함.
 - 라. 사업용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면제에서 50% 경감하여 과세하도록 함.
 - 마. 5,000톤 초과 외항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85의 경감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함.
2. 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1건당 600~27,000원의 정액세로 되어 있는 면허세를 1,000~45,000원으로 상향조정함.
3. 재산세의 세율적용 과세표준단계를 조정하여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함.
4. 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함.
5. 농지세의 세율구조를 소득세의 세율과 같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여 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최저세율을 3%로 함. (법제처 제공)

8-2. 地方稅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190號 1990. 12. 31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단서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의3 본문중 “법 제104조 제2호의 4”를 “법 제110조4 제2항 제7호”로 하여 동조를 제79조의17로 한다.

제76조 제1항 제4호중 “3만비·티·유급 이상”을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으로 한다.

제79조의3 제1호 및 제2호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채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제79조의4중 “입목”을 “입목·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한다.

제94조 제2항 제1호중 “제79조 제1호”를 “제79조 제1항 제1호”로 한다.

제96조 제2호중 “분묘지”를 “묘지”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한 부동산의 등기

제96조의2중 “산정기준과 방법은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으로 한다”를 “산정기준과 방법 및 부채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98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99조의3 제1항중 “법 제132조의2”를 “법 제132조의2 제1항”으로, “제146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46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2조 제4항중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법인”을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후 2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한다.

제104조중 “법 제132조 제1항 제5호”를 “법 제132조 제1항 제5호, 법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로 한다.

제137조의7중 “제73조의3”을 “제79조의17”로 한다.

제14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기

법 제104조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

제146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

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한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유객반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기타 승용자동차

(1)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 차로서 승용, 승용겸화물자동차를 말한다.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2) 대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 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 이하인 버스

제146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96조의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하며, 납기개시일 이후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등록지에서 당해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제195조 제2호중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를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99조 및 제200조 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3 제2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골프회원권 등이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고 자동차세율 등이 조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세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채납자의 행방·재산 유무의 확인없이 결손 처분이 가능한 채납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영 제14조 제2항).
- 나. 토지 등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함(영 제79조의3 제2항).
- 다. 비영리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96조).
- 라. 자동차세율의 개편에 따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납세지 등을 조정함(영 제146조의4 및 제146조의6).
- 마.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별장 등 제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95조). 〈법제처 제공〉

8-3. 地方稅法施行規則中 改正令

內務部令 第516號 1990. 12. 31

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중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종류의 중기로 한다”를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4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7(콘도미니엄 회원권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 제7호의3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1조 본문중 “항공기 및 어업권”을 “항공기·어업권·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51조 제1항중 “법 제132조의2 제3호”를 “법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

2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의3중 “법 제128조 제9항 및 영 제98조”를 “법 제128조 제9항”으로 한다.

제57조의2 제3호의2중 “비영업용승용차”를 “비영업용 자동차”로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중 “광구”를 “중기”로 한다.

제104조의15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 사업자의 석유저장·비축시설용 토지

제105조 제3호중 “지상정착물”을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

다)”로 한다.

제110조 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제11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적용요령 다목중 “도로의”를 “도로·접도구역과 공장구내의 저수지·침전지의”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 서식]·[별지 제72호 서식]의 부표·[별지 제76호 서식]·[별지 제76호 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7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 서식]·[별지 제56호 서식]·[별지 제71호 서식]·[별지 제72호 서식] 및 [별지 제72의2호 서식] 중 “방

위세”를 각각 “교육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 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위산업체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 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급여의 총액에 대하여는 그 급여의 총액을 동 개정규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5]

과세대상 중기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중 기 명	범 위
1. 불도우저	무한계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계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3. 로우더	무한계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4. 지게차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5. 스크레퍼	토사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
8. 모우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주식인 것
9. 로울러	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벡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 휘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5.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 휘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 살포기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4세제곱미터(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증 기 명	범 위
22. 천공기	크로라식 또는 굴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햄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
24. 사리채취기	인 것
25. 준설선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것
26. 노면측정장비	멤프식·바켓식·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향식인 것
27.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 노면파쇄기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 선별기	파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기타 증기	이 표에 계기된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내무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별지 제18호 서식]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제 호

권리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 오 납 액	④ 구분	⑤ 년도	⑥ 기분	⑦ 세목	⑧ 정 당 납 부 (납입)액	⑨ 기 납 부 (납입)액	⑩ 과 오 금 액	⑪ 과 오 납 년 월 일	환부이자	
									⑫ 일수	⑬ 금액
	⑭ 과오납합계액(가)							(가-나) ⑮ 총당후잔액 (환부액)		
충 당 내 역	⑯ 구 분	⑰ 년 도	⑱ 기 분	⑲ 세 목	⑳ 미 납 금 액		㉑ 총 당 금 액	㉒ 과 오 납 된 사 유		
	도 세									
	시 군 세									
㉓ 총 당 금 액(나)							㉔ 총 당 후 미 납 액			
시장(구청장) 군수(읍면장)										

㉕

21226-02411 일
'90.12.20 승인

* 공지사항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총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하십시오.
3.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십시오.

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권리자	㉕ 성명			㉖ 주민등록번호		
	㉗ 주소					
환부방법	㉘ 현금지급	㉙ 계좌송금	㉚ 은행지점	㉛ 계좌번호		
㉜년 도	㉝기 분	㉞세 목	㉟ 과목납금액	㊱ 환부 이자	㊲ 청구 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㊳						

세입과오납금환부영수증

㉜년 도	㉝기 분	㉞세 목	㉟ 과 오 납 금	㊱ 환 부 이 자	㊲ 영 수 금 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㊳					

268mm × 190mm
신문용지 54g/m²

4. 대리인이 영수할 때에는 권리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5.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표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72호 서식]의 부표

관 리 번 호			
시·군·구	읍·면·동	대 장 번 호	
		일련번호	삽입번호

중 기 과 세 대 장

작성순위번호	
--------	--

①성명및명칭 남 세 의 무 자	②주 소	③주민등록번호	④변동사항기록확인	⑤취득세과세상황	⑥적 요	과 세 사 항				
						년도	년	년	년	
						세 목				
						⑫제 산 세				
						⑬교 육 세				
						⑭ 계				
⑦중기등록번호										
⑧취득년월일										
⑨등록년월일										
⑩명칭및종류										
⑪용 도										

21226-12111/비
'90. 12. 20 승인

297mm × 210mm
(인쇄용지(특) 70g/m²)

[별지 제76호 서식]

세입번호		일련번호	
①성명 및 명칭	②주소	③주민등록번호	④취득년월일
⑤차량번호	년간세액	년간세액	요
⑥취득년월일	년	⑬자동차세	기
⑦종류	도	⑭교육세	⑮1기
⑧배기량	cc	⑮계	⑯2기
⑨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		⑯자동차세	⑰3기
⑩용도(영업용 또는 비영업용)		⑰교육세	⑱4기
⑪년식		⑱계	㉑1기
⑫정치장소재지		⑲자동차세	㉒2기
		⑲교육세	㉓3기
		⑲계	㉔4기
		⑳자동차세	㉕1기
		㉑교육세	㉖2기
		㉑계	㉗3기
		㉒자동차세	㉘4기
		㉓교육세	㉙1기
		㉓계	㉚2기
		㉔자동차세	㉛3기
		㉕교육세	㉜4기
		㉕계	㉝1기
		㉖자동차세	㉞2기
		㉗교육세	㉟3기
		㉗계	㊱4기
		㉘자동차세	㊲1기
		㉙교육세	㊳2기
		㉙계	㊴3기
		㉚자동차세	㊵4기
		㉛교육세	㊶1기
		㉛계	㊷2기
		㉜자동차세	㊸3기
		㉝교육세	㊹4기
		㉝계	㊺1기
		㉞자동차세	㊻2기
		㉟교육세	㊼3기
		㉟계	㊽4기
		㊱자동차세	㊾1기
		㊲교육세	㊿2기
		㊲계	㊿3기
		㊳자동차세	㊿4기
		㊴교육세	
		㊴계	
		㊵자동차세	
		㊶교육세	
		㊶계	
		㊷자동차세	
		㊸교육세	
		㊸계	
		㊹자동차세	
		㊺교육세	
		㊺계	
		㊻자동차세	
		㊼교육세	
		㊼계	
		㊽자동차세	
		㊾교육세	
		㊾계	
		㊿자동차세	
		㊿교육세	
		㊿계	

21226-07111비
'90. 12. 20 승인

297mm×2110mm
(인쇄용지(특급) 70g/m²)

차종별 용도별	비용관			영업용			영업용			합계			적요		
	용		관	용		업	용		업	계		합			
	자동차세	교육세액계	대수	자동차세	교육세액계	대수	자동차세	교육세액계	대수	자동차세	교육세액계	대수			
800cc이하															
1000cc이하															
15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3000cc초과															
소계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소계															

21226-12211비
'90.12.20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특) 70g/m²)

(ㄷ ㅁ)

[별지 제76호 서식]의 부표 계속

화 물 자 동 차	1,000kg 이하																						
	2,000kg 이하																						
	3,000kg 이하																						
	4,000kg 이하																						
	5,000kg 이하																						
	8,000kg 이하																						
	10,000kg 이하																						
	10,000kg 초과																						
	소 계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소 계																							
3륜 이하 소형자동차																							
합 계																							

자동차 이동사항통지서

① 수 신		시 장 수 구청장		전 소 유 자				년 월 일 현재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② 이 동 (취득) 년월일	③ 차 량 번 호	④ 용 도	⑤ 차 종	⑥ 차 명	⑦ 년 식	⑧ 배 기 량	⑨ 이 동 구 분	⑩ 성 명 (명칭)	⑪ 주 소	⑫ 성 명 (명칭)	⑬ 주 소	⑭ 정 치 장	⑮ 전 정 처 장	⑯ 사 용 의 폐 기 년 월 일	⑰ 비 고
	② 이 동 (취득) 년월일	③ 차 량 번 호	④ 용 도	⑤ 차 종	⑥ 차 명	⑦ 년 식	⑧ 배 기 량	⑨ 이 동 구 분	⑩ 성 명 (명칭)	⑪ 주 소	⑫ 성 명 (명칭)				

21226-07211 일
 '90. 12. 20 승인
 268mm × 190mm
 신문용지 54g/m²

◀ 개정이유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중기의 범위를 정함(제40조의2).
- 나.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 등의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추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시설의 범위를 정함(제40조의7).
- 다.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결정기준을 정함(제41조 제6호).
-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부속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05조).
- 마.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의료사업을 하는 지방공사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체는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함(제110조 및 제110조의2).〈내무부 제공〉